

이광재 당시 당선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전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고합254, 394(병합)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2642

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나. 이광재

주거 서울 종○○

등록기준지 강원 ○○

2. 나. 원○○ (피고인 1.의 전 보좌관 - 주)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강원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영종, 김범기

변호인

변호사 박범계, 최순용, 조동환, 이광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구교실 (이상 피고인 이광재를 위하여)
변호사 윤강식 (피고인 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0.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광재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원○○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원○○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광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광재로부터 1억 1,417만 1,000원을, 피고인 원○○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광재

(1) 정대근(당시 농협중앙회장 - 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각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 정대근은 2009. 3.경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이라고 한다) 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 및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켄스 매각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같은 해 4월경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기소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검찰의 여죄수사와 추가기소를 막고 구형에서 선처를 얻기 위해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는 진술을 하여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다. 또 당시 정대근이 피고인 이광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자금이 출처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라' 식당 앞 피고인 이광재의 승용차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정대근의 진술은, 그 실제 시점이 정대근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보석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2006. 8. 11.로부터 얼마 후인 같은 해 9. 1.이어서 이를 착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수사 및 원심 법정에서 계속 2005. 5.경이라고 반복하였는바, 이는 보석직후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농협중앙회 회장실에서 돈 받기를 거절하며 폭넓은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이광재의 안주머니에 봉투를 찢러 넣었다는 정대근의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칙에도 반한다.

위와 같이 정대근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한편 원심이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 아닐 뿐더러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피고인 이광재가 2004. 3. 25.경 보광 휘닉스파크 객실에서 처음 만난 정대근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다.

(2) 2006. 4. 17. 롯데호텔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 박연차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다수의 뇌물공여, 정치자금제 공,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있던 처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향후 절차에서 선처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박연차의 관련 진술, 즉 피고인 이광재에게 미화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전하려고 하였으나 받기를 거절하여 실랑이 끝에 룸 옷장 안에 이를 두고 먼저 나왔다는 부분은, 꼭 돈을 전하고자 했다면 식탁이나 의자 위 등 피고인 이광재와 가까운 장소에 이를 두고 나왔어야 할 텐데 굳이 4-5m 떨어진 옷장 안에 두고 나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박연차가 피고인 이광재에게 제공하였다는 미화 5만 달러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당시 주된 음식의 양이나 박연차가 피고인 이광재와 만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상문을 만난 점을 고려하면 당시 박연차와 피고인 이광재 외에 정상문 등 다른 인물이 동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가령’ 등 의외어 - 주) 박연차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옷장 안에 돈을 두고 나갔다고 하여 피고인 이광재가 박연차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신분이 널리 알려진 피고인 이광재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호텔에서 미화 5만 달러가 든 대봉투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박연차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06. 8. 9. 베트남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 이에 관한 박연차의 진술은 박연차가 피고인 이광재와 그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미화 5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놓으며 ‘여행경비에 보태쓰라’고 말한 다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는 내용인바, 그동안 피고인 이광재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박연차가 동료 국회의원 한병도, 보좌관 원○○, 후배 최○○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돈이 들어 있음을 표시하며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박연차가 공동피고인 원○○를 따로 불러 미화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원○○의 진술 및 박연차와 피고인 이광재가 동시에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한병도의 원심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

공동피고인 원○○와 박연차, 박연차의 딸 박○○ 등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박연차는 원○○에게 개인적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광재 일행이 출국과정에서 VIP용 검색대가 아닌 일반검색대를 이용하다가 원○○의 달러 초과반출이 적발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 이광재는 박연차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가 이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조차 몰랐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6. 8. 9. 베트남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

: 당시 박연차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미화 3만달러는 곧 반환하였으므로 실제 수수액은 미화 2만 달러이다. 그리고 위 금원은 공동 피고인 이광재가 없는 가운데 이광재와는 무관하게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공동피고인 이광재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고 보더라도 그 성격은 순수한 여행경비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가사 피고인 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공동피고인 이광재 말고도 국회의원 한병도가 동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원○○가 공동피고인 이광재와 공모하여 수수한 정치자금은 미화 2만 5,000달러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원○○가 공동피고인 이광재와 공모하여 미화 5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8. 3. 27. 제18대 총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

: 정승영(휴켄스 전 대표, 태광실업 전 비서실장 - 주)은 이광재를 위한 선거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2,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원○○도 같은 이유에서 위 금원을 받았을 뿐 이광재의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원○○가 이광재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원○○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이광재에 대한 무죄 부분)

(가) 정상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점

(이 논지에서 이○○은 정상문의 사돈 이인영의 아들을 지칭한다. - 주)

: 이인영, 이○○이 정상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이광재에게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권○○은 직접 영월에 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이광재를 만나러 영월까지 직접 갈 이유가 없는 점, 이인영, 이○○이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사돈이자 장인인 정상문을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광재가 처 이정숙을 통하여 정상문의 부탁을 받은 이인영으로부터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박연차로부터 뉴욕시 강서회관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점

: 객현규(강서회관 사장 - 주)는 박연차와 오랜 기간 친분과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박연차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 이유가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이광재의 범행을 허위로 주장할 원인이나 동기도 전혀 없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가 뉴욕시 강서회관에서 객현규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또 임○○(당시 통역 - 주)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가 미국 방문 당시 뉴욕을 방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반면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실시한 김○○의 원심 법정진술은 허위라는 의심이 들고, 변호인이 제출한 일정보 등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잘못된 증거판단으로 객현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다) 박연차로부터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점

: 정승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는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공동피고인 원○○을 통하여 위 금액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승영이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 전○○과의 통화사실과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이광재와 정승영의 통화시점부터 원○○가 정승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 사이에 피고인 이광재 측과 원○○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 정승영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 사안의 중대성,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

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피고인 이광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원○○는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대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각 부정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이광재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6. 2.경 농협중앙회 회장 사무실 및 2006. 9. 1. ‘○○나라’ 식당 부근의 피고인 이광재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2회에 걸쳐 미화 1만 달러씩을 제공하였다는 요지의 정대근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등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가 정대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각 부정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정대근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대근의 수행비서 박○○, 운전기사 김○○, 비서실 의전팀장 김○○ 등에 대한 각 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그 정확성이 뒷받침되고, 피고인 이광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대근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나라’ 식당 관련 부분의 정확한 일시는 2006. 9. 1.로서 정대근이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6. 8. 11.경 보석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지 20여 일 후인바, 정대근이 위와 같이 특징적 요소가 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에 이를 2005. 5.경이라고 진술한 점은 다소 의문이다. 하지만 정대근과 피고인 이광재가 강원 지역 조합장들과 함께 강원 지역에서 식사한 것은 그때가 유일하여 위 일시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의 동일성이 흔들리거나 혼동될 염려는 없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석 이후 정대근의 자금출처도 수궁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은 정대근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정대근은 평소에도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795면 등), 이를 위하여 비서실 서무과장 김○○에게 지시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2005. 하반기에 미화 합계 3만 5,000달러, 2006. 상반기에 미화 합계 1만 5,000달러, 2007. 상반기에 미화 합계 3만 5,000달러를 환전하였다(증거기록 제2383면, 제2397면, 제2411면).

한편 이와 별도로 2004년경부터 2006. 5.경까지 운전기사 김○○을 시켜 수회에 걸쳐 미화

1만 달러 또는 2만 달러를 오히려 원화로 환전한 일도 있어 미화 달러는 항상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대근은 2006년에는 적어도 월 2,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5. 12.경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 원, 2006. 2. 중순경 박연차로부터 20억 원 등의 뇌물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2006. 2. 무렵은 물론 보석석방 직후인 2006. 9. 1.경에도 정대근이 미화 1만 달러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제공된 자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대근은 1,000만 원 또는 미화 1만 달러 한도에서 정치인 등에게 자금을 제공하는데(증거기록 제481면, 제486면) 피고인 이광재의 경우 중요한 사람이어서 위 한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정대근이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정식 직함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음. - 주) 이강철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광재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한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5) 정대근은 2006. 2.경 피고인 이광재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이광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던 차에 지역구의 농협 조합장들 밥이라도 사주라는 뜻에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1. 또는 2.경 피고인 이광재가 농협중앙회 회장실로 정대근을 방문하였다가 정대근이 외부에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수 십분을 기다리게 되어 불쾌한 기색을 표시하였다가 정대근을 만나고 나오면서는 얼굴이 밝아졌다는 취지의 당시 정대근의 비서실 의전팀장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증거기록 제728면)의 진술기재도 정대근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정대근은 ○○나라 식당에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준 이유도 자기를 대신하여 지역 조합장들 밥이라도 사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정대근은 피고인 이광재의 지역구 소재 농협 조합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수긍할 수 있다.

(6) '○○나라' 식당 여주인 김○○은 당심에서 '식사 후 정대근이 먼저 출발하고 나서 피고인 이광재가 나갔기 때문에 정대근이 동승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김○○이 식당 밖 차량의 모든 사정까지 다 확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증거로 정대근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당시 식사에 참석하였던 지역 조합장들은 정대근이 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 이광재와 정대근의 차량을 배웅하는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였으므로 이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정대근의 수행비서 박○○과 기사 김○○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겪은 부분이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이들 진술의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7) 정대근은 이 사건으로 2009. 3. 14,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2, 검찰에 참고인으로, 같은 해 6. 25.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 정대근은 현대 자동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이었고, 이와 별도로 뇌물수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 이광재 등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부정기부한 점은 따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위 공소제기된 사건들과 불기소된 사안의 내용, 법정형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정대근이 본인의 공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정대근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이전인 2004. 3. 25.에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당시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이광재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처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대근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6. 4. 17. 롯데호텔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이광재의 주장에 관하여

(1)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증인 이광재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박연차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박연차의 진술은 검찰에서 원심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이광재와 만난 시각, 장소, 예약경위, 주문한 식사량과 결제대금, 박연차의 당일 일정 등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또한 박연차의 법정진술 태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나) 박연차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이광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박연차는 식사를 마칠 무렵 미화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이광재가 이를 거절하며 뿌리치자 이광재의 옷이 걸려 있는 옷장 안에 위 돈 봉투를 두고 먼저 나온 사실(공판기록 제157면, 제160면, 증거기록 제1546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는 위 돈 봉투가 옷장 안

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다음에서 보듯 방안에 아무도 없는 만큼 위 돈 봉투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또한 방을 나가기 전 옷장을 열면 위 돈 봉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니, 피고인 이광재 바로 옆에 있는 탁자나 의자 위가 아닌 옷장 안에 돈 봉투를 두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합리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다) 위 증거들 특히 박연차에 대한 위 조서들의 진술기재, 이광재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박연차는 평소 가죽가방에 미화 5만 달러 내지 10만 달러는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당일도 위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제198면, 제886면, 제901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박연차의 재력이나 평소 씀씀이 등에 비추어보면 별도의 금융자료에 관한 증거 없이도 당시 박연차가 미화 5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 환전내역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메트로폴리탄 클럽(롯데호텔의 예약제 VIP 양식당 - 주)의 2006. 4. 17.자 전산자료(증거기록 제610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박연차가 주문한 요리는 한우안심스테이크 2접시, 전복스테이크 1접시, 양갈비구이 1접시, 프렌치모듬치즈 2접시, 양송이스트프, 유기농샐러드, 전통시저샐러드, 과일 각 1접시 및 생수 4병으로서 2명이 먹기에는 다소 많은 양임이 인정되나, 한우안심스테이크가 2접시인 것으로 보아 2명이 한우안심스테이크로 주 식사를 하며 보조 요리와 안주 등을 넉넉히 주문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데다가, 위 증거들 특히 박연차에 대한 위 진술조서들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박연차는 평소 식사량이 많고 이 날도 넉넉하게 음식을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공판기록 제189면 등), 위 주문한 음식의 양을 이유로 피고인 이광재와 단 둘이 만났다는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문 등 다른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박연차에 대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박연차는 정상문과 당일 17:00경 같은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헤어진 후 다른 볼 일을 보다가 피고인 이광재와 위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둘이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공판기록 제193면, 제194면 등), 증인 정상문의 당시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마) 기록에 의하면 박연차가 이 사건으로 2009. 3. 16. 및 같은 달 22. 검찰에 참고인으로, 같은 해 6. 11.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본인에 대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83, 1438, 1440, 1445, 1447, 2009고합455, 689(각 병합)}의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검사가 박연차에 대하여 피고인 이광재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부정기부한 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 및 위 기소된 범죄들과 불기소된 범죄의 내용, 법정형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

은 정황만으로 박연차가 본인의 공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이광재가 미화 5만 달러를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이광재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광재는 박연차가 나간 후 미화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박연차는 위 메트로폴리탄 클럽을 먼저 나가면서 피고인 이광재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 안에 미화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넣어 두고 갔고, 피고인 이광재는 실랑이 과정을 통해 위 봉투에 돈이 들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위 방안에는 피고인 이광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피고인 이광재에 대한 각 원심 공판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재는 검찰 및 원심에서 박연차와 위 롯데호텔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돈 봉투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취지의 변소는 한 적이 없다.

(다) 위 메트로폴리탄 클럽은 예약손님만 받는 업소로서 당일에는 박연차와 피고인 이광재만 예약되어 있었고, 그럴 경우 보통 종업원도 계산대에 1, 2명 정도만 배치되며, 종업원들이 손님의 소지품, 즉 봉투, 가방, 쇼핑백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위 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당시 회원 약 385명 대부분이 기업인으로서 업소 입장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고객이고, 피고인 이광재는 정회원은 물론 명예회원도 아닌데다가 그렇게 많은 매상을 올리는 편도 아니어서 종업원들 중에는 위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광재는 위 봉투에 든 미화 5만 달러를 적당한 방법으로 소지하여 종업원 등의 이목을 끌지 않고도 위 업소를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이광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2006. 8. 9. 베트남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9. 베트남 호치민시 비엔호아에 있는 태광비나(태광산업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 - 주) 회장 사무실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 판시 증거들, 특히 박연차, 태광비나 이사 이○○, 국회의원 한병도 등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또는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미화 5만 달러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이광재의 주장, 자신이 귀속주체로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미화 3만 달러는 반환하였다는 피고인 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장변경과 직권판단

: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중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박연차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부분을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소파 앞 탁자 위에 박연차가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놓은 미화 5만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음으로써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원심판결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닐지라도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대로 해당하여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관련 사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박연차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인물들의 관계

① 박연차는 2003.경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이광재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그때까지 몇 차례 만났는데, 박연차는 평소 피고인 이광재가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좋은평가를 하였다(공판기록 제155면 등). 그리고 박연차의 1남 3녀 중 셋째 딸인 박○○은 2003. 3.경부터 2004. 4.경까지는 피고인 이광재가 있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이어서 2004. 7.경부터 2006. 11.경까지는 피고인 이광재의 6급 상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829, 832면 등).

② 피고인 원○○은 피고인 이광재의 대학교 후배로서 2004. 6.경 부터 피고인 이광재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 5.경 건강문제로 사직한 상태였다. 박연차는 피고인 원○○을 피고인들의 베트남 방문 이전에 2-4번 만난적이 있으나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이라는 정도만 알고 지냈고, 특별히 자주 만나거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공판기록 제214면).

③ 한병도는 피고인 이광재와 같은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증거기록 제122면), 당시 피고인 이광재와는 2-3일에 한번 꼴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적으로는 자신보다 2살 위인 피고인 이광재를 형이라고 호칭하는 가까운 사이였다(공판기록 제566면, 증거기록 제2053면). 한병도는 2005.경 피고인 이광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서갑원, 김○○ 등과 함께(이때 갔던 국회의원들은 전부 열린우리당 내 친노 계열 정파인 의정연구센터 멤버였음. - 주) 중국 청도 현지에 있는 박연차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공판기록 제178면 등), 이때 밤에는 피고인 이광재, 박연차와 함께 술자리도 가진바 있다(증거기록 제1185면 등).

나) 피고인들 일행의 베트남 여행 계획

① 피고인 이광재는 2006. 8. 초순경 한병도, 원○○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였다. 위 여행은 중국 청도 방문처럼 박연차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밤에는 술자리를 가지는 내용으로서, 2006. 8. 8. 저녁 출국하여 같은 달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달 9. 및 10. 이틀을 베트남에서 보내는 일정이었다.

② 여행 전 박연차는 미리 박연차 측에게 부탁하여 피고인들 일행이 머물 숙소를 예약하는 한편, 피고인들 일행이 여행일정 중 박연차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신발제조업체 태광비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해 두었다.

다) 피고인들 일행의 태광비나 방문과 5만 달러 수수 과정

① 피고인들 일행은 2006. 8. 8. 늦은 밤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잔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 오전 태광비나를 방문하여 박연차를 만났다.

한편 이때쯤 피고인 이광재의 대학 후배로서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최○○도 태광비나로

와서 이날 일정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먼저 회장실에서 박연차와 환담을 나눈 다음 박연차의 안내로 신발제조공장을 견학하고, 박연차의 관사를 돌아본 후 점심식사전 환담을 나누기 위하여 다시 박연차의 회장실로 돌아왔다.

② 이들은 회장실 응접탁자 앞에 앉게 되었는데, 상석인 응접탁자 중앙 혼자 앉은 자리에 박연차가 피고인들 일행을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앉고, 박연차의 앞 왼쪽으로는 피고인 이광재, 원○○가, 박연차의 앞 오른쪽으로는 한병도, 최○○이 차례로 맞은편 일행을 마주보면서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160면 등). 한편, 박연차는 피고인 이광재의 방문 약 이를 전 태광비나 이사 이○○에게 미화 5만 달러를 흰색 봉투 1개당 미화 1만 달러씩 담은 후 빈 휴대전화 상자 안에 넣고 다시 이를 선물용 포장지에 싸서 소핑백에 넣어두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들 일행과 환담을 하면서 이○○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이○○은 위 미화 5만 달러가 든 소핑백을 박연차가 앉은 소파 오른쪽의 협탁 위에 두고 갔다(공판기록 제324-327면).

③ 박연차는 이○○이 회장실에서 나가자 협탁 위에 있던 위 소핑백을 집어 들고 피고인 이광재 앞 응접탁자(이것은 피고인 이광재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있는 한병도 앞 응접탁자이기도 하다)에 올려놓으며 ‘여행경비에 보태쓰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45면, 공판기록 제162면 등). 그러자 피고인 이광재는 괜찮다면서 겸연쩍어했고(증거기록 제1549면) 어색한 분위기를 느낀 박연차는 먼저 회장실을 나가 건물 밖에서 검정개와 놀면서 일행들을 기다렸다.

④ 박연차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병도, 이어서 최○○과 피고인들이 나왔는데, 박연차가 나온 때로부터 피고인들 일행들이 모두 나올 때까지는 약 5-7분이 소요되었다(공판기록 제236면 등). 한편 이때 피고인 원○○은 일행들 중 유일하게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⑤ 한편, 박연차와 피고인들 일행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이○○은 위 회장실에 들렀는데, 이때 위 미화 5만 달러가 담겨 있던 휴대전화 상자과 이를 싣 포장지가 찢어진 채 박연차와 피고인 이광재, 원○○ 쪽 사이에 위치한 그곳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공판기록 제329면 등).

⑥ 피고인들 일행은 박연차와 태광비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념품으로 태광비나 자체생산 운동화를 증정받은 후(증거기록 제2067면), 태광비나를 출발하여 이후 호치민 시내를 관광하고, 삭스핀 전문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날 일정을 마쳤다.

라) 피고인들 일행의 이후 일정 등

① 피고인들 일행은 2006. 8. 10. 점심식사를 하고 시내관광을 하였으며, 전날 저녁과 같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늦은 밤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갔다.

② 공항 출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원○○는 한도액인 7,000달러 이상의 미 달러화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는데, 자정 무렵 이○○에게 전화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이○○은 베트남 현지인에게 문의하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6. 8. 11. 00:30경 피고인 원○○로부터 공항근무 한국인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공판기록 제337면 등).

③ 피고인들 일행의 베트남 여행 경비는 호텔 숙박비, 2006. 8. 9. 저녁식사비 미화 1,865달러(증거기록 제○○-○○면) 및 주점대금 미화 1,254.10달러(증거기록 제1801-1802면) 등을 모두 박연차 측에서 부담하였고, 같은 달 10. 점심, 저녁 및 가라오케 주점대금은 피고인 원○○가 계산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56-2057면), 피고인 원○○는 이와 같은 일행의 공동비용 및 선물구입 등으로 베트남 체류 중 미화 약 4,000~5,000달러를 사용하였다.

④ 태광비나 측에서 베트남 공장을 방문한 피고인들 일행에게 제공한 기념품은 위 운동화 외에는 없었다.

2) 박연차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피고인 원○○ 혼자 수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 먼저 피고인 원○○가 다른 일행들이 없는 가운데 박연차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위 금원을 혼자 수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연차는 피고인들 일행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미화 5만 달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사실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박연차가 화장실을 떠난 후 피고인들 일행만 남아 있다가 순차로 5-7분후에 나왔는데 미화 5만 달러를 포함한 포장지 등이 뜯긴 채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일행이 그 자리에서 미화 5만 달러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박연차는 피고인 원○○를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으로 아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친밀관계가 없고, 박연차는 원심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원○○에게 위 금원을 줄 이유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64면), 박연차는 피고인 원○○가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을 그만 둔 사실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알았을 정도(공판기록 제161면 등)로 피고인 원○○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현직 국회의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보좌관에게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연차가 미화 5만 달러 전부를 피고인 원○○에게 개인적인 용건으로 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박연차가 제공한 미화 5만 달러의 성격에 관하여

: 위와 같이 박연차가 제공한 5만 달러는 당시 국내 통화로 약 5,0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서 사실상 이를 일정의 여행을 위한 경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액인 점, 피고인들 일행의 여행은 박연차가 위 금원을 제공한 다음날 끝날 뿐 아니라 박연차 측에서 피고인들 일행의 숙박료와 당일 저녁식사비용과 가라오케 주점대금까지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이 앞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점, 박연차는 피고인 원○○가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이라고 알고 있었고, 최○○은 현지에서 피고인 이광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일시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 중 이 둘을 제외하면 박연차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한 사람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남게 되는 점에다가 박연차와 피고인 이광재, 국회의원 한병도의 친분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박연차가 명목상으로는 여행경비에 보태쓰라고 말하였지만 실질은 피고인 이광재 등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여져 결국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원의 성격이 여행경비로서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박연차가 제공한 미화 5만 달러의 기부상대방과 그 범위에 관하여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와 근거에서 박연차가 제공한 위 금원을 기부받은 상대방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연차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여행경비에 보태쓰라’ 고 말하였는바, 박연차는 피고인들 일행이 함께 여행 중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박연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 중 피고인 원○○가 피고인 이광재를 시종하는 보좌관이라고 알고 있었고, 최○○은 현지에서 피고인 이광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일시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 중 박연차에게 접대할 의미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만이 남게 된다.

② 또한 박연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광재 및 국회의원 한병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긴밀한 사전 친분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원○○와 현지에서 합류한 최○○의 경우에는 관계도 그다지 긴밀하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많은 금원을 제공할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 또한 위 두 사람의 경우에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금원이 제공되었어도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입장이 못된다.

③ 이와 관련하여 박연차는 검찰에서 피고인 이광재에게 위 금원을 줄 생각에서 그 앞 응접 탁자 위에 위 쇼핑백을 올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박연차가 원심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들 일행이 다 같은 일행이기 때문에 누구 특

정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보다도 피고인 이광재 의원이 메인이니까 피고인 이광재 의원을 겨냥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반복하고 있는바(공판기록 209면), 박연차가 피고인을 일행이 모두 보고 듣는 가운데 여행경비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위 소핑백을 건네준 점, 피고인 이광재 앞 응접탁자는 일행들이 앉아 있는 형태상 국회의원 한병도 앞 응접탁자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의미는 다만 일행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 지위도 높고 박연차와도 가장 가까운 피고인 이광재를 일행의 대표로 보고 그에게 건네준 것일 뿐으로 보인다. 만일 박연차가 다른 일행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의도였다면 얼마든지 피고인 이광재를 따로 불러 소핑백을 전달함으로써 그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박연차의 회장실에는 피고인들 일행이 앉은 탁자 외에도 별도의 내실과 회의용 공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60면), 따라서 위 금원이 피고인 이광재에게 단독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뿐만 아니라, 박연차의 앞 오른쪽 바로 옆에는 국회의원인 한병도가 앉아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운동화 외에는 피고인들 일행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았던 바, 박연차가 당시 한병도를 금원제공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광재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박연차는 태광비나를 방문하는 정치인 등에게 보통 5,000달러, 드물지만 최대 5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제348면, 증거기록 제147면 등), 여기에 더하여 박연차가 과거 중국 청도에서도 한병도를 만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연차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제공한 위 금원중에는 한병도에게도 일정 부분 지급하여 그를 섭섭하지 않게 할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는 절친한 사이로서 위 한병도가 베트남 여행에 참가하게 된 것도 피고인 이광재의 제안과 권유에서 비롯된 것인데, 박연차로부터 한병도가 보는 자리에서 위 거액의 금원을 받은 피고인 이광재로서는 당연히 그 중 일부를 한병도에게 분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광재는 현재 위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분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으로 보인다.

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을 받은 다음날 점심 및 저녁식사비용과 주점대금 등을 피고인 원○○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계산하였는바, 실제 박연차가 준 금원이 이와 같이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 등의 공동경비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액도 같은 취지에서 분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이 박연차가 제공한 5만 달러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에 각 정치자금으로 기부되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들에게 각 기부된 돈의 범위 내지 액수

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병도보다는 피고인 이광재가 박연차와 더 친밀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친밀도만으로 피고인 이광재에게 더 많은 금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실제로 피고인 이광재에게 분배된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두 정치인에게 기부금액이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심은 위 기부액의 전부가 아닌 1/2에 해당하는 미화 2만 5,000달러만을 피고인 이광재가 기부받은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5) 피고인 원○○의 공범으로서의 책임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원○○는 박연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현장에서 위 정치자금이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확인하고, 분배, 소지하는 등 피고인 이광재와 한병도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원○○가 피고인 이광재와 공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원○○는 피고인 이광재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광재가 기부받은 범위의 미화 2만 5,000달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원○○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6) 기부금액 중 3만 달러를 반환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원○○가 당일 오후 박연차의 관사에 미화 3만 달러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들이 박연차의 관사를 방문한 것은 이날 오전이고 점심 이후 이들은 바로 시내여행을 떠남으로써 오후에는 박연차의 관사에 들른 적이 없는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피고인 원○○가 박연차나 태광비나 측에 위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알린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인정되는 부분 즉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화 2만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원○○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 이광재의 해당부분은 직권파기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미화 2만 5,000달러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파기 후 계속 살피기로 한다.

라. 2008. 3. 27.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원○○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정승영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원○○은 박연차가 피고인 이광재에게 제공하는 선거자금임을 알면서도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승영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정승영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고인 원○○가 정승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08. 4. 7.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 일 앞둔 시기였다. 또한 피고인 원○○와 정승영은 만남의 광장에서 골프신발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고받는 등 상당히 비밀스럽게 행동하였는바, 이는 당시 두 사람 모두 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전달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3) 정승영과 피고인 원○○는 그동안 박연차 기업의 임원과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이라는 지위에서 만나왔다. 한편, 피고인 원○○는 정승영의 제안으로 박연차 경영의 태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하자 있는 운동화를 피고인 이광재의 지역구 학생들에게 교부하였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5.경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위 벌금은 박연차 측에서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원○○가 특별히 손실을 본 것은 없었다. 따라서 약 4년이 지나 새삼스럽게 박연차나 정승영이 피고인 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앞서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원○○는 2006. 8. 9. 베트남 방문시에도 위 벌금 등과 관련해 위로금 명목으로 박연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도 같은 명목의 위로금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마. 정상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논지에서 이○○은 정상문의 사돈 이인영의 아들을 지칭한다. - 주)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광재는 2004.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경 사이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강원 영월 군 영월읍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 근처 도로에서 처 이정숙을 통하여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의 부탁을 받은 이인영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인영, 권○○,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본 경험칙에 반하고, 정상문의 딸이자 이인영의 며느리인 정혜진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일기장 기재와 배치되며, 이인영 본인인 한 잡지사 인터뷰 내용과도 상이하고, 정상문의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기타 이인영,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모두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그 내용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증인 이인영, 이○○의 각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그리고 권○○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 중 이인영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검찰조서의 진술기재는, “① 2004. 4. 초순경 본인 부부, 아들인 이○○ 부부, 사돈인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상문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상문으로부터 피고인 이광재에게 선거자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② 약 이틀 후 정상문으로부터 피고인 이광재와 약속이 되었으니 위 피고인의 영월 선거사무실로 가서 1,000만 원을 전하라는 부탁과 함께 위 선거사무실 및 피고인 이광재의 휴대전화번호를 각 전달받았으며, ③ 다음 날 아들 이○○이 마련해 조그만 박스 또는 쇼핑백에 돈다발 묶음 그대로 넣어준 현금 1,000만 원을 양주 등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권○○과 함께 영월로 갔고, ④ 영월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광재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고 대신 위 피고인의 처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왔는데, ⑤ 피고인 이광재는 술에 많이 취하여 늦는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처 이정숙은 정상문의 심부름으로 돈을 전하겠다는 말에도 크게 대

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이광재와 전화통화 후 선거사무실 부근 도로상에서 위 돈을 받았다” 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인 정상문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피고인 이광재를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족 모임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② 얼마 후 아버지 이인영으로부터 정상문이 피고인 이광재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이를 마련하여 100만원권 10다발을 봉투에 담아 쇼핑백에 넣어주었으며, ③ 이후 이인영으로부터 영월에 다녀왔는데 피고인 이광재는 술에 취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 처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는 내용이다.

그리고 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① 2004. 제17대 총선 직전 이인영과 함께 영월에 있는 피고인 이광재의 선거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출발전 이○○이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고, ② 영월 피고인 이광재의 선거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이인영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어떤 여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는 내용이다.

(나)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인영의 당심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인영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정상문이 사돈을 맺은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인영에게 금원의 조달 방법 및 변제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이광재를 위하여 영월에 있는 선거사무실까지 찾아가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인영이 진술한 피고인 이광재의 처 이정숙의 태도와 행동, 즉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부탁으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예를 갖추지 않았고, 초면의 남자로부터 돈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그 앞에서 후보자에게 전화 걸어 받아도 되는지를 물어 보고 또 주저 없이 노상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 직전의 후보자가 술에 취하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위 총무비서관과 정한 약속을 어겼다는 진술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위 진술내용은 쇼핑백을 실은 위치에 관하여 권○○의 검찰 진술과, 그리고 가족 모임에

서 정상문이 이인영에게 피고인 이광재에 대한 금전지원 부탁을 했는지 여부 및 현금 포장방법에 관하여 이○○의 진술과 서로 상이하다.

라) 검사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이인영의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307번)의 영상에 의하면 이인영의 휴대전화에 당시 피고인 이광재의 휴대전화번호(011-9***-0***)가 저장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명함 사본(증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 이광재의 선거용 명함에도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인영이 정상문을 통하지 않고도 위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 가사 이인영이 정상문을 통해서 위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상문이 피고인 이인영에 대한 자금전달 부탁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는 이인영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인영, 이○○ 부자는 권○○을 거쳐 알게 된 신성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정상문을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정상문을 통한 청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인영은 권○○을 통하여 위 신성해운측에게 정상문을 통한 청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듯한 모습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권○○을 대동하여 피고인 이광재의 선거사무실에 다녀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이○○의 당심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이○○의 진술은, ① 본인의 2008. 2.경 주간지와와의 인터뷰 내용, 즉 “정상문의 지시로 S 해운 고위인사들과 함께 지역 선거사무실까지 내려가 A의원(피고인 이광재를 지칭하는 것이다)을 비롯한 친노 정치인 4명에게 3,000만 원씩 전달했다” 는 부분과 배치되는 점, ② 이○○은 학력, 여자관계, 재산 등을 속이고 정상문의 딸 정혜진과 2004. 1.경 혼인하였다가 2006. 6.경 이혼하였으며, 이인영 등과 공모하여 정상문 등을 통하여 위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29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정상문과 그 관련인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은 이인영으로부터 피고인 이광재의 처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데 불과하여, 당심이 이인영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이○○의 위 진술 또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없다.

3) 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권○○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인영과 함께 피고인 이광재의 영월 선거사무실에

갔다오는 길에 잠시 정차하여 이인영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나 그 여자에게 소핑백을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날 이인영이 돈이 든 소핑백을 가지고 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권○○은 정상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노2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알선수재) 피고사건(신성해운 세무조사무마 청탁의혹 사건을 뜻한다. 2009년 9월 10일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당시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원심 2009고합254 부분 증거기록 제330면 등), 당시에서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당시 법정진술이 부당한 회유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다.

(다) 소결론

: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바. 박연차로부터 뉴욕시 강서회관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광재는 2004. 5. 하순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강서회관 2층에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강서회관 사장 곽현규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음으로써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곽현규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바, 이는 당시의 정세상황 및 피고인 이광재의 미국방문일정상 피고인 이광재가 뉴욕시 강서회관까지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약속할 때의 느낌으로 당시 만난 인물의 손가락 일부가 없음을 알았다는 곽현규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체류기간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 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곽현규의 허위진술 또는 착오에 의한 진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곽현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 앞서 본 원심의 판단근거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뉴욕시 강서회관을 찾아온 피고인 이광재에게 미화 2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곽현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이광재는 일정상 뉴욕시 강서회관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2) 곽현규는 박연차로부터 미리 피고인 이광재에 대하여 부탁받았으므로, 실제로 피고인 이광재의 방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손님보다는 음식이나 서비스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곽현규는 돈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이광재의 일행 또는 위 피고인이 돈을 받아 넣었다는 옷의 모양이나 종류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이광재를 배웅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과연 곽현규가 뉴욕시 강서회관을 찾아온 피고인 이광재를 실제로 만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

3) 곽현규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2만 달러를 전해주자 피고인 이광재는 초면의 곽현규를 상대로 거절도 하지 않고 곽현규의 앞에서 봉투를 뺀 후 돈다발만 양쪽 상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른 자금전달 상황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의 태도와도 크게 달라 그 진술내용이 의심스럽다.

4) 곽현규는 오랜 기간 박연차의 부탁을 받아 뉴욕시 강서회관을 방문하는 박연차의 지인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던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피고인 이광재와 다른 인물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이광재의 뉴욕시 강서회관 방문 가능성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임○○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광재가 미국 방문기간이 부분은 원래 '미국방○○간' 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부분의 숨김 처리는 문맥으로 보아 실수라 생각해 임의

로 수정하였다. 이후의 '방○○간' 표현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주) 뉴욕시 강서회관을 다녀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이광재는 2004. 5. 18. 화요일 10:30경 미국 워싱턴디시에 도착하여 같은 달 22. 토요일 12:30경 워싱턴디시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위 귀국일에는 아무 일정이 없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워싱턴디시에 있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다.

2) 피고인 이광재는 통역인 임○○, 김○○을 동행하여 같은 숙소에 머물며 모든 방문일정을 함께 소화하였다. 임○○의 경우 국무부에서 개최된 오찬에 1번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이광재의 일정에는 동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광재가 미국 체류기간 동안 임○○, 김○○ 외 다른 일행들을 동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방문기간 동안의 저녁일정과 관련해, 첫날인 2004. 5. 18. 및 귀국 전날인 같은 달 21. 피고인 이광재, 임○○, 김○○이 워싱턴디시에 머물며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와 김○○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같은 달 19. 수요일 또는 20. 목요일의 경우, 김○○은 그 이틀도 일행들이 워싱턴디시를 떠나지 않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반면, 임○○은 그 중 하루는 오후의 일정이 없어 혼자 숙소에 있었고 이때 다른 일행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날 15:00경까지는 피고인 이광재, 김○○과 함께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점심식사도 하였다는 것이다.

4) 피고인 이광재의 워싱턴디시 숙소에서 뉴욕 강서회관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 3-4시간이 소요되고(임○○의 위 법정진술), 승용차나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공판기록 제715쪽).

5) 따라서 임○○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이광재가 방문기간 중 하루는 15:00경 이후의 일정이 비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워싱턴디시를 출발하여 뉴욕시 강서회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란 시간상 대단히 촉박하다.

6)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광재의 위 미국방문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결정(2004. 5. 14.)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국정관계인사들과 만나 한미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을 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박연차가 딸 박○○ 등을 통해 권유한 적이 있더라도, 다음날 오전부터 중요한 방문일정이 잡혀 있는 피고인 이광재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굳이 뉴욕시 강서회관을 방문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객현규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이광재가 꼭 그때 방문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 그 밖에 박연차, 이인영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박연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박연차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사. 박연차로부터 제18대 총선 관련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광재는 2008. 3. 26.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원○○에게 지시하여 같은 달 27. 서울 서초구 원지동 만남의 광장에서 정승영으로부터 피고인 이광재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게 함으로써, 원○○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 통화내역에 의하면 정승영은 피고인 이광재와 통화한 지 약 40분 후 피고인 이광재의 보좌관 전○○과 4분여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이광재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위 통화의 내용은 피고인 이광재의 범의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정승영은 그 내용은 물론 통화사실조차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정승영의 통화 이후 원○○가 돈을 받을 때까지 원○○와 피고인 측 사이에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광재가 원○○와 공모하여 위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정승영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정승영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및 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역조회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원○○가 정승영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이광재가 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의 수령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음으로써 원○○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이광재는 정승영이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급히 통화를 끊은 후 보좌관 전○○에게 전화하여 정승영이 오지 않도록 잘 말리도록 지시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들간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정승영과 피고인 이광재가 2008. 3. 26.21:07경 1분 4초간 통화하였고, 그 후 피고인 이광재가 같은 날 21:44경 전○○에게 전화하였으며, 그 직후 전○○이 같은 날 21:46경 정승영에게 전화하였음이 인정되어, 통화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화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이에 부합한다.

2) 정승영과 전○○ 사이의 위 통화는 그 시간이 약 4분에 달하고 그때까지 정승영과 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위 2,000만 원의 전달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전○○은 원심에서 피고인 이광재의 지시대로 '안 오셔도 된다. 지역상황이 좋고 상대방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다가 적발되어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거 후 인사 한번 드리겠다' 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정승영은 통화하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정승영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원○○은 피고인 이광재의 전, 현직 보좌관 중 유일하게 정승영과 다소간의 친분이라도 있는 인물이어서, 정승영이 피고인 이광재나 그 보좌관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고자 원○○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박연차가 정승영에게 원래 선거자금지원의 방법으로 지시한 것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광재의 후원회에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정승영은 피고인 이광재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을 구하기 어렵고 강원도 연구 직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피고인 이광재 진영의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때는 피고인 이광재의 상대당 후보가 금품살포행위로 적발되어 교체되는 시기였던 터라 피고인 이광재 측에서는 정승영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 그 밖에 박연차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광재가 원○○에게 정치자금 수수를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직권 파기사유와 함께 피고인 원○○의 항소가 이유 있는바, 이를 원심판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 전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원○○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을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2006. 8. 9. 베트남 호치민시 비엔호아에 있는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소파 앞 탁자 위에 박연차가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놓은 미화 5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에서 그 중 피고인 이광재의 몫 미화 2만 5,000달러를 건네받음으로써 박연차로부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시 제2의 가. 사실에 관한 부분에 “증인 이인영의 당시 법정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광재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이광재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원○○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광재)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가. 피고인 이광재 : 1억 1,417만 1,000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0. 6. 4. 외국통화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1,201.8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억 1,417만1,000원 = 9만 5,000 달러 × 1,201.8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나. 피고인 원○○ : 2,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광재

: 피고인은 박연차, 정승영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이미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부정하게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미화 합계9만 5,000 달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이르기까지 약 7년 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와 의정활동을 위해 애쓴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의 경위,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원○○

: 피고인은 이광재가 박연차로부터 미화 2만 5,000달러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위 2만 5,000달러 수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광재의 전직 보좌관으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내용,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위 2. 다. (1) 및 (3)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2006. 8. 9.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 2. 다. (3)의 (나), (다)항과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외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일연
판사 김강대

※ 본 판결문은 필자가 경희대학교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 정보 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의 판례 검색을 통해 발견한 판결문 전문을 읽기 쉽도록 Adobe InDesign CS3로 편집한 것입니다.

※ 판결문 원문의 익명 처리의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 본 판결문에 달린 모든 주는 티스토리 블로그 <세상을 보는 검은 눈, Skyjet> (<http://skyjet.tistory.com/>) 의 운영자 Skyjet이 달았습니다.

※ 이 PDF는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비리 의혹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판결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이 PDF 역시 파일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유통이 가능합니다.

※ 본 PDF에는 윤고딕 330, 340, 350 글꼴이 사용되었습니다.

※ PDF 제작에 사용된 글꼴과 프로그램은 모두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